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49호

나.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찬성자 12명)

다. 발의일자 : 2020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다원화 되고 급변하게 될 미래경제사회를 앞두고 있음.
- 하지만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시스템은 현실적 경제활동과는 동떨어진 이론적 학습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생활을 펼쳐야할 성인들 또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시민들에게 경제생활 및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경제교육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경제교육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기본계획수립, 경제교육의 종합적 추진, 경제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경제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 아.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자.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지식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경제교육 지원 현황

- 국가의 경제발전은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와 함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함.
-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이하 “경제교육법”)을 제정(2009.5.4.시행)하고, ▶경제교육 교재 개발, ▶인력양성,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육성,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에서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교육 교재 개발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충청북도가 경제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보조와 경제정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문학, 재테크, 금융 등에 대한 분야별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제분야 전반에 대한 별도의 교육 사업은 없음.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경제교육인력 양성, 경제교육단체 지원,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경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양질의 경제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 현행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인력의 연수와 재교육 기회 제공, 경제교육의 진흥과 장려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므로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경제교육법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경제교육은 경제학적 지식의 이해와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적 사고력 향상과 이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능력 함양에 있다는 점에서²⁾,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2)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교육(제1호)과 경제교육단체(제2호), 경제교육인력(제3호) 등의 용어는 경제교육법 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어 법률과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제1조의 목적을 경제적 민주시민 양성으로까지 확장하게 되면 경제교육의 정의를 조례안 보다는 확장해야 할 것임.

1) 「경제교육지원법」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최종민, 2019. 경제교육의 정체성과 문제점. 「경제교육연구」 제26권 제2권.

(3)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안 제3조는 경제교육의 준거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경제교육의 실용성과 독립성, 그리고 비차별성(보편성)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시민이 합리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 방향 및 목표, ▶학습 체계 구축, ▶인력의 연수 및 활용, ▶상호 협력체계 구축, ▶민간 경제교육 지원, ▶평가와 자원조달 등을 포함한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제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전략과 사업,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경제교육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안은 3년 단위로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필요가 있음.

(5) 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안 제6조 ~ 안 제10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안 제6조), 위원회 구성(안 제7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 위원회 운영(안 제10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경제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종합적인 정책추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경제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볼 때, 신설되는 위원회가 형해화(形骸化)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경제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상의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³⁾ 했으나 제정안에는 존속기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6)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경제교육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이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제1항)하고, 경제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2항)하도록 하였음.

- 경제이론과 달리 생활경제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방식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와 재교육 기회의 제공은 필수적임.

- 다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배움e’ 사이트에서 경제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인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경제교육법은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7조 제3항), 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7) 경제교육의 위탁과 재정지원(안 제12조·안 제13조)

-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경제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 경제교육단체가 ▶시민경제교육, ▶인력양성,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안 제13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제 관련 전문교육을 유관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교육단체를 양성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설립한 지역경제교육센터(15개 지역)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은행이나 무역협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공공·민간 기관에서 경제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경제교육 사업을 이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교류협력(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시장이 경제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와 한국은행,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교육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에 실시한 ‘경제교육 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4%이며, 일반 국민의 96.9%가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이는 정규교육 과정 외에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수요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정부기관이 일반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나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의

민간기관에서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 범 준	02-2180-8058

[참고자료]

「경제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

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 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독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 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 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